

부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단3447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4326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단344756 판결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훈

변 론 종 결 2020. 9. 17.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2. 17.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2. 17.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부인한다.1)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2. 17.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부인한다. 피고는 D에게 피고와 A 사이에 2017.

2. 17. 체결된 별지 목록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2019. 6. 19.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기술보증기금은 2011. 6. 22. A가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A의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A는 2017. 5. 31.경 어음부도로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기술보증기금은 2018. 2. 7. A를

대위하여 E은행에 대출원금 85,000,000원 및 이자 946,434원 등 합계 85,946,434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A는 2016. 6. 7. D와 사이에 양산시 F, G동호(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10.부터 2018.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10,000,000원은 2017. 6.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10.까지 D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7. 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승계약정(이하 ‘이 사건

승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이미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은 2017. 6. 10. 지급하며, 임대차기간을 2017. 2. 10.부터 2019. 2. 9.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기술보증기금은 2018. 3. 9.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승계약정에 의한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4189호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 및 A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 24. 부산지방법원 2018하단21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9. 6. 11. 이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을 수계한다는 내용의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6. 19.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으며, 위 2019.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는 2019. 6.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A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시가 295,000,000원 상당의 부산 금정구 H아파트 I호 등 합계 315,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J 주식회사에 대한 213,000,000원의 대출금채무, 원고에 대한 85,000,000원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 E은행에 대한 15,000,000원의 대출금채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166,550원의 채무 등 합계 315,166,5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의 행사로써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97조 제1항), 부인권은 소의 제기 뿐만 아니라 항변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바(제396조 제1항), 이때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구하는 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부인권 행사가 인정된다면 부인권 행사의 형성적 효과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하게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원상회복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원고는 소제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부인의 선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부인

채권자취소권(부인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부인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술보증기금은 2018. 2. 7. A를 위하여 E은행에 대출원금 85,000,000원 및 이자 946,434원 등 합계 85,946,434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A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기술보증기금의 위 구상금채권은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그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이 경과한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술보증기금이 A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부인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2)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

사해행위의 취소(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부인)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부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부인)되기 전에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직접 양수인에게 그 채권양도의 취소(부인)와 함께 그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임대인 D는 2020. 6. 19.경 이 사건 승계약정 및 피고와 사이에 2017. 2. 17. 다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그동안의 연체 차임, 전기 및 수도요금 등 합계 21,577,282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부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상계되어 소멸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최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A와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10,000,000원을 공동출자하여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A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이 아니라 10,000,000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 당시 A는 3,7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A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은 6,300,000원(= 10,000,000원 - 3,7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A는 캠핑용 주택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매월 수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사업이 번창하여 경기도 쪽으로 사업장을 옮길 예정이니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라는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동건

별 지

파산자 [] ([])가 [] ([])에 대하여 가
지는 경남 양산시 [] 동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

1) 원고는 부인권행사를 주장하면서 ‘취소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부인한다’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